

취업준비 고등학생을 위한 성희롱 예방 표준교육내용 및 방법 개발 : 델파이 기법을 활용

Development of Standard Contents and Methods of the Prevent Education of Sexual Harassment in High School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Using Delphi Method

구민욱*, 박완주**

경기물류고등학교*,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

Min-Wook Gu(healthteacher@korea.kr)*, Wan-Ju Park(wanjupark@knu.ac.kr)**

요약

취업을 선택하는 취업준비 고등학생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여성가족부의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경험자의 연령대별 1위가 20대로 나타나, 직장생활에 입문하게 되는 취업준비 고등학생들은 직장 내 성희롱 대상의 취약 연령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취업을 앞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성희롱예방 표준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델파이조사의 전문패널은 학교 성교육 및 취업담당 전문가 30명으로, 구조적인 델파이 방법의 의견수렴과 합의과정을 통해 도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0.0 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문항별 가중치 순위, Kendall's W 순위,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한 교육내용과 방법의 정제 결과, 5개 영역 140개의 내용에서 최종적으로 3개 영역의 37개 표준교육내용과 방법이 최종 선정되었다.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 및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고등보건교과 성교육 영역, 고용노동부의 성희롱예방 대응매뉴얼의 지침과 서로 비교분석하여 본 연구 결과의 차별성을 제시하면서 취업준비 고등학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학문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성희롱 | 성교육 | 청소년 | 예방 | 델파이 | 연구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velop the standardized contents and methods for preventing sexual harassment for hight school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after graduation. Delphi methodology was used with 30 experts. Three-round Delphi surveys were analyzed using Kendall's coefficient of concordance W analysis, appropriateness for reliability of consensus opinion. Data were analyzed respectively by descriptive statistics using SPSS Win version 20.0.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standardized contents were classified with 3 domains and 83 contents, then 46 contents were selected from Kendall's W analysis and weight rank. Finally, 37 contents have taken as standards contents for prevention education. If high school students are educated with systematic standardized education before employment, it will be prevented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fter graduation.

■ keyword : | Sexual Harassment | Sex Education | Adolescent | Prevention | Delphi |

* 본 연구는 2015학년도 경북대학교 복현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Bokhyeon Research Fund, 2015.

접수일자 : 2018년 02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3월 26일

수정일자 : 2018년 03월 26일

교신저자 : 박완주, e-mail : wanjupark@knu.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성희롱은 각 사업장과 사회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성희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20년 이상이 되었으나, 여전히 성희롱 피해가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회 초년생에 대한 성희롱 발생과 대처에 대한 실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고졸자 취업현황 보고에 따르면 실업계 고등학생의 졸업 후 취업현황은 2017년에는 34.7%로 나타나 2011년에는 23.3%에 그쳤던 것에 비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또한 여성가족부의 2015년 성희롱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경험자 중 20대가 40.0%로 연령대별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30대 36.6%로 나타나, 나이가 어린 고졸 취업자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성희롱 피해에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임을 예측할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들은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가족부의 같은 조사에서 전체 피해 경험자 중 78.4%가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48.7%, 문제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48.2%, 업무와 인사 상 불이익 우려로 인한 경우가 16.2%, 소문이 두려워서 참는 경우가 15.4%, 대처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이 13.9%, 도움 받을 곳을 몰라서 13.9%, 나머지 2.9%는 기타의 이유였다[2]. 노총래(2002)의 청소년의 성희롱 피해 및 가해경험 연구에서, 성희롱 피해 청소년 중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을 취한 청소년은 1.6~11.1%에 불과하여 도움요청 행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였다[3].

성희롱은 사건 발생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다. 극단적인 경우 섭식 장애, 물질남용, 자해, 자살 생각 등을 유발하며[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의 별현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5]. 또한 성희롱은 직장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노동생산성을 저해하

고, 피해자의 자기 성적결정권과 노동권,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한다[6]. 성희롱 문제는 피해를 입은 개인과 가해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므로, 건강하고 안전한 직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예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강사나 교육담당자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 직무교육에 준하여 형식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점 등이 교육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7]. 초·중·고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성희롱과 성매매 예방을 포함한 성폭력 예방교육은 매년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2014년부터 초, 중, 고 학생들에게 매년 15차시의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국가성교육표준안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나, 관련교과 시간을 빌어 성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중심 교육내용이나 성인지적 관점의 교육이 부족한 점[8] 등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가 미흡한 실정이다.

공교육의 마지막 단계인 고등학교의 경우, 취업을 앞둔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직업윤리, 안전교육, 대인관계 및 직장예절, 산업체해보상 및 노동인권교육, 세법, 소비자 교육, 성교육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현장실습 안전교육을 5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9].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 중 1시간 정도를 할애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포함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준비 고등학생을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대부분 외부강사 위탁교육으로 진행되며 때문에, 표준화된 내용이 아닌, 각 강사들의 개별적인 교수학습지도안으로 일회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동안의 국내 성교육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전반적인 성폭력예방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0][11]. 또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매뉴얼의 경우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을 대상의 정보제공 위주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고졸취업자로 바로 노동시장에 투입되기 전 학교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성희롱에 대한 현실 인식과 비판적 관점 기르기, 경계교육 등 성 인지적 관점의 교육 등 청소년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10]. 따라서 취업준비 고등학생을 위한 실질적이고 표준화된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과 방법의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교육 전문가 및 고등학생 취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합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는 텔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12]. 이를 통해 취업준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의 표준내용 및 방법을 개발하여 청소년을 위한 일선 학교교육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하거나, 이로 인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체의 행동을 말한다[13]. 일반적인 성희롱에 비해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는 차이점이 있다. 미국의 고용기회평등위원회에서는 성희롱을 성차별적 사회문제로 간주하고 있고, 성희롱 피해에 대해 보상적,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14]. 1992년 유엔(UN)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에서는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 혹은 직장 내 남녀의 존엄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차별적 행위 등을 성희롱이라 규정하고[15], 대다수 나라에서는 성희롱을 성차별과 관련된 인권문제로 바라보고 있다[14].

우리 정부도 2005년에 차별 시정과 관련된 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하였으며, 기존의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201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성희롱 행위를 인간 평등권의 침해이자 차별행위로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희롱 판단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거나, 심지어는 본인의 자각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판단에서 성적 침해를 입은 상황이 명백하면 성희롱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성희롱에 대한 국내의 법률적 해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명시하여, 주로 직장 내 성희롱에 국한하고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로 구분한다[14][15].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업무관련성 여부를 성희롱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는 신체, 심리, 사회 등 광범위한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회나 주변의 부정적 성통념으로 인한 근거 없는 추측과 비난을 통해 2차적인 피해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성희롱 피해자는 직업적 성취가 어렵고, 경력 관리에도 악영향을 받게 되며 모든 상황은 피해자 개인의 노동권을 침해한다. 결국 직장 내 성희롱은 인권 뿐 아니라 노동환경과 생산력을 저해하게 되므로[14],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에 진입하기 전 취업준비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예방과 대처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표준교육내용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

하다.

2. 우리나라의 성희롱 예방교육

초·중·고 공교육 교육과정 안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이 성매매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연간 2차시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도록 대상과 횟수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테두리 속에서 성희롱 예방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다. 또한 빼듯한 교육과정 속에서 성교육 수업 시간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관련교과를 통한 형식적인 성교육 정보 전달이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 교육행사로 진행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

현재 학교 성교육의 기준 자료로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보건 교과 내용체계와 2015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성교육표준안이 적용되고 있다. 교과 교육과정으로서의 보건교육 내용 중 성희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성적 자기결정권, 성과 개인, 사회적 관계의 탐색 및 성폭력을 포함한 성희롱의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요소, 예방방안 및 법과 제도에 관한 내용이 개발되도록 고시되어 있다[16]. 그러나 17차시 가량의 1단위 보건수업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또한 2015년에 교육부에서 개발한 학교성교육표준안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자료 중, 직접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 있는 부분은 남녀의 성심리 차이, 효과적인 거절방법, 성 문제에 대한 위기관리와 응호의 3차시 정도이다. 성희롱 예방만을 단독 차시로 설정한 단원은 없으며 30차시 대부분이 기본적인 성교육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17].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주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매뉴얼이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18]. 해당 매뉴얼의 교육자료 부분은 법률상 성희롱의 규정과 판단기준, 직장 내 성희롱 유형, 피해자의 대응방법, 사내 성희롱 구제절차에 대해 약 1시간에서 2시간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19]. 이 매뉴얼에는 대부분의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요소는 담겨 있으나,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직접

피해 상황별로 거절방법을 구체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자료 등은 담겨져 있지 않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실질적인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응전략 위주의 교육 자료 재구성과 학습 활동지 개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3. 멜파이 기법

멜파이 기법은 예측하려는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정리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12]. 초기에는 주로 기업체의 생산성이나 사업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방편으로 주로 이용되었으나, 이후 다양한 사회문제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학문에서 이용되고 있다. 즉, 멜파이 기법은 추정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는 경우,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정확할 것이라는 객관적 계량화와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12].

멜파이 기법은 전문가의 주관적·직관적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에 의존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전문가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20].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문가 집단의 크기는 합의점 도출을 위한 역동성이 더 중요하므로 10~18명 정도가 적합하다는 견해[21], 합의를 위한 그룹 역동성을 고려하여 15~35명이 적정하다는 견해[23] 또는 연구목적에 따라 더 적거나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전문가 선정방법으로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른 전문가를 추천받는 방법인 눈덩이 굴리기 표집 기법과 연구실적, 실무분야 직위와 경력, 담당업무 등을 평가 근거를 전문성 결정방법에 많이 활용한다[12][23].

멜파이 기법의 일반적인 운영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20]. 일반적으로 1차 설문조사에서는 개방형 설문을 제시하여 연구 주제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다. 1차 멜파이 설문지가 구조화, 조직화, 세분화 되어 있을 경우, 응답 반응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개방형 질문으로 제시하여 현장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전문가의 응답을 회수하여 유사한 응답의 분류와 범주화를 통해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방법, 평가에 관한 요소를 분

석하고 결과를 정리하여 2차 델파이 설문서 작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우선순위 평정이나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설문을 구조화한다. 회수된 설문서의 통계분석과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3차 설문을 작성한다. 3차 설문조사에서는 참여 전문가들에게 각 질문의 적절성, 집중경향과 분산도 측정값뿐만 아니라 본인의 2차 설문에서의 반응을 함께 제공하여,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와 본인의 반응을 참고하여 최종 수정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신의 답변이 사분위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그 이유를 적을 수 있는란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었으면 설문조사를 종료하고, 그렇지 않다면 수렴될 때까지 반복할 수 있다 [22][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 직전의 고등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표준 예방교육내용과 방법을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한 학교 성교육 전문가 및 성희롱, 성폭력 관련기관 전문가와 취업담당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활용할 수 있는 델파이 기법이 적용되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취업준비 고등학생을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표준내용과 방법 개발을 위해 델파이 기법을 사용한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델파이 연구의 참여 전문패널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주체 관련 직종에서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충족시키는 전문가를 섭외하였으며, 전문가들의 합의를 위한 그룹 역동성을 고려하여, 15~35명의 참여자가 적정 표본 수임을 참고하였다[23].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충족하는 전문가들에게 또 다른 전문가를 소개받는 눈덩이 굴리기 표집(snowballing) 방법을 이용하여[12], 직접방문, 면담, 전화, 이메일을 통해 연구 참

여의사를 직접 태진하고 참여를 자필 동의서로 승인한 전문가 30명을 델파이 연구의 전문가 패널로 선정하였다. 적용대상이 노동시장에 고졸취업자로 바로 투입되는 취약한 인구집단임을 고려하여, 고등학교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성교육 교재개발이나 교과서 집필 경험을 가진 경력 10년 이상의 보건교사 14명, 성폭력 관련 업무 3년 이상으로 국가 연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성폭력 임상전문가 9명, 고등학교 학생 취업지도 교사와 실업계 고등학교 교감, 교장 등의 관리자 3명 및 K 도교육청 성교육 정책담당 경력자와 보건교과 수석교사 2명 및 대학교수 1명, 성교육 연구소 소장 1명 등 총 30명이 선정되었다.

3. 연구 도구

3.1 1라운드 델파이 조사 설문지

2015 학교성교육표준안과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고등보건 교과 및 연구목적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설문지의 1차 예비 문항을 5개로 시작하였다. 내용 타당도를 위해 간호학과 교수 1인, K도 중등보건교육연구회 연구위원, 통계학 교수와의 협의를 토대로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5영역 8문항으로 1라운드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가 작성되었다. 1라운드 델파이 설문은 취업준비 고등학생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한 표준내용과 적용 방안을 다양하고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모두 개방형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3.2 2라운드 델파이 조사 설문지

1라운드 델파이 조사 설문에서 도출된 결과에서, 유사 항목은 통합하고 중복 항목은 삭제하는 분류작업을 거쳐 83개의 문항으로 2라운드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가 작성되었다. 2라운드 델파이 설문에서는 각 항목의 우선순위에 대해 평정하도록 하였다. 2라운드 설문에서는 설문결과의 점수가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 고찰과 1라운드 전문가 기타 의견을 통해 추가 또는 통합할 내용이 있는지, 새 진술이 필요한 항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질문이 추가되었다.

3.3 3라운드 멜파이 조사 설문지

2차 멜파이 조사에서 선정된 각 문항의 적절성을 재평가하고 2차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46개의 문항으로 3차 멜파이 조사 설문지가 작성되었다. 각 문항의 이해와 내용의 적절성을 간호학 및 통계학 교수, K도 중등보건교육 전문가에 의뢰하여 사전 검토하였다. 3라운드 멜파이 설문에서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이르기까지 점수가 단계화된 선택형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3라운드 설문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적절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3.4 멜파이 조사를 통한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총 1, 2, 3라운드의 멜파이 조사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4월 21일부터 2017년 5월 20일까지 총 30일이 소요되었다. 자료수집은 문헌고찰과 면담을 통한 사전조사와, 멜파이 설문지를 이용한 본조사로 구성되었다.

사전검사는 본 연구 관련분야의 교수와 교육자, 통계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문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연구 절차는 연구자가 연구목적과 내용을 먼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전문가 패널에게 알리고, 연구 참여여부 확인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는 3차 멜파이 설문이 완료된 직후, 소정의 사례비 등을 제공하였다. 설문지의 배부와 회수는 이메일을 활용하였다. 멜파이 조사 설문지의 전문가 패널로 참여하는 전문가의 수는 30명으로 각각 설문 회차 별 응답률은 1라운드 100%, 2라운드 100%, 3라운드는 2차 응답자수 대비 96.7%였다.

수집된 멜파이 설문 자료는 SPSS Win 20.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차 설문지는 취업준비 고등학생 대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한 표준내용과 방법 개발을 위해 5개 주요 영역에 대해 비구조화된 개방형 설문지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취합하여, 분석 목적에 부합하도록 범주화하고, 이후 분석단위를 결정되었다. 2차 설문지는 전문가 의견을 모아 우선순위와 의견응답 일치성을 확인하기 위해 문항별 가중치 순위와

Kendall's W 순위를 통해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문항별 가중치는 항목별 응답 순위에 따라 비율척도를 적용하여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각각의 속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를 계산하고 속성별 순위를 정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전문가의 응답 일치성은 기술통계를 통해 평균, 표준편차 및 카이제곱검정을 구하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3차 설문지는 각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기술통계를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함으로써 앞서 선정된 각 문항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멜파이 전문가 30인 중 성별은 여자가 83.3%으로 남자가 16.7%에 비해 높은 비율이었으며, 연령은 40~50세가 40%, 30~40세가 33.3%, 50세 이상이 26.7%의 순서로 나타났다. 직무 경력은 10~20년이 43.3%, 3~10년이 36.7%, 20년 이상이 20.0%의 순이었다. 결혼 여부는 기혼자가 70%로 미혼자 30%에 비해 많았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40%, 천주교 26.7%, 불교 16.7%, 무교 16.7%이었으며, 최종 학력은 대학원 졸업자가 73.3%, 대학 졸업자가 26.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직업은 중등학교 교사가 56.7%로 이중 3명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담당 부부장교사와 학교 교감, 교장 등의 관리자이며, 나머지 14명은 교육부와 지역교육청 성교육자료나 교과서 개발 참여 경력이 있는 성교육 전문보건교사 및 성교육 전문가 경력의 학교관리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담당자가 20%, 성폭력 전문 사회복지사 10%, 대학교수와 보건교육 수석교사, 성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가, 법의간호사가 각 1명으로 3.3%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50회 이상이 46.7%, 10회 이하와 10회 이상 30회 미만 실시가 각 20%, 30~50회가 13.3%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모두는 성희롱 피해자나 피해학생을 면담하거나 지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문현고찰과 학교현장 문제의 분석을 통해 5개 영역의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였으며, 1차 델파이 조사 회수율은 100%였다. 간호학과 교수 1인과 성폭력 상담가 1인, K도 중등보건교육연구위원 1인, 통계학 교수 1인에게 전문가 패널들이 작성한 각 문항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 프로그램 내용요소의 융합과 영역 구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한 후 총 140개의 내용을 성격에 따라 교육 내용, 교육 평가, 교육 방법, 교육확산 전략의 4개 영역으로 유목화하였다[Table 1].

Table 1. Education Contents and Method Drawn from the 1st Delphi Survey (N=30)

Domain	Sub-domain	items
Education contents	Concept of sexual harassment	11
	Prevention	22
	Increase of gender sensitivity	13
Evaluation	Criteria for achievement	24
Educational Method	Teaching method	19
	Materials	11
	Group size	5
	Session	6
	Time	11
	instructor	5
	Place	5
	Legal infra	3
Diffusion strategy	Formate new strategies	5
4	13	140

3.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30명의 전문패널 모두 회신을 하여 1라운드 대비 회수율 100%였으며 2차 델파이 평가자 응답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 값을 보여 평가자간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2차 설문 결과분석 시 대학교수 1인, K도 보건교육연구회 연구위원과의 논의를 통해, 교육 내용결과 항목의 재 유목화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1-3 질문의 항목 17개를 성희롱 예방과 대처, 성인지 감수성 항상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결과, 평가요소인 성취기준의 경우 최종 델파이 조사 이후 선정된 교육 내용요소에 부합하는 성취기준을 1차 응답 결과에서 추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교육평가 영역은 2차 설문에서는 우선순위 평정에

서 제외하였다. 또한 취업준비 고등학생을 위해 교육해야 하는 성희롱 대처방안을 성희롱 갈등상황 전, 중, 후로 구분한 질문의 경우, 교육대상자가 성희롱을 경험할 것임을 암시하는 부정적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1번 질문의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요소와 중복되는 답변이 있어 2차 델파이 질문지에서는 이를 흡수하여 유목화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델파이 1차 설문결과의 140개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과 영역을 정리하여 총 83개 항목의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확산 전략의 3가지 영역으로 2차 델파이 질문지가 구성되었다[Table 2].

2차 설문응답 분석 결과, 측정에 사용된 총 83개 변수 중 가중치 순위 49 이상, 전문패널의 의견일치도를 의미하는 Kendall's W 순위 75이상을 절단점으로 한 결과, 38개 항목이 제거되어 최종 45개의 항목이 도출되었다. 여기에 성희롱 예방교육의 의무화 추진에 대한 기타 의견 1개 항목이 추가되어 3차 설문 문항으로 최종 46개를 작성하였다. 교육확산 전략 방안에서는 Kendall's W 검증의 결과에서 $p>.05$ 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평가자들의 의견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Education Contents and Methods Drawn from the 2nd Delphi Survey (N=30)

Sub-domain	Contents	Kendall's W test	Consensus agreement	Select (Weight ≥ 49 or Kendall's W ≥ 75)
			Weight	rank
			rank	rank
Meaning of sexual harassment	Concept of sexual harassment		6	20 select
	Types		11	27 select
	Causes		27	49 select
	Legal criteria	Kendall W=.379	8	22 select
	Problems	$\chi^2 = 102,284$	42	59 select
	Interpersonal relation	$df=9$	32	54 select
	Gender equality	$p<.001$	54	63 remove
	Gender-based violence		72	69 remove
Prevention & coping	Sex commercialization		74	72 remove
	Physiological changes		76	73 remove
	How to prevent		9	12 select
	How to avoid	Kendall W=.260	23	29 select
	Procedures in case laws & institutions	$\chi^2 = 54,656$	18	26 select
	Creating new culture	$df=7$	38	42 select
	How to prevent at work	$p<.001$	57	55 remove
	Maintain proper distance		58	56 remove
	Drinking prevention		48	28 select

	Increase sensitivity		21	33	select
	Importance of self-determination	Kendall	13	24	select
	Peace & human rights	W=.216	77	67	remove
	Improve self-esteem	X ² =51.742	31	46	select
	Effective rejection	df=7	37	50	select
	Good communication	p<.001	51	60	remove
	Conflict resolution		65	62	remove
	Difference in gender		43	53	select
	Sex-related attitudes		22	39	select
Increase gender sensitivity	Discussion learning		2	40	select
	Simulation learning		3	41	select
	Drama, role play		5	43	select
	Education in workplace		50	78	remove
	Media literacy		36	71	select
	Mock trial training	Kendall	33	68	select
	Organization visit	W=.279	66	81	remove
	Problem-based learning	X ² =117.321	25	66	select
	Publicity activities	df=14	64	80	remove
	Survey method	p<.001	75	83	remove
Teaching methods	Brainstorming method		63	79	remove
	Mentor education		49	77	remove
	Club education		44	74	select
	Lecture		69	82	remove
	Investigate & announce		34	70	select
	Standard lecture	Kendall	26	15	select
	Drama & video	W=.236	7	5	select
Education materials	Brochures	X ² =35.429	70	47	remove
	Questionnaire	df=5	59	37	remove
	App. & cyber.	p<.001	52	52	remove
	Teacher training		61	38	remove
	Small size	Kendall	1	1	select
Education size	Classroom size	W=.843	15	4	select
	3rd, grade only	X ² =101.147	45	16	select
	Each grade	df=4	71	35	remove
	All grade in a place	p<.001	83	51	remove
Session	One	Kendall	82	48	remove
	Two	W=.433	60	23	remove
	Three	X ² =51.947	19	7	select
	Four	df=4	20	8	select
	More than five (≥ 5)	p<.001	30	11	select
Time	Health education time		4	17	select
	Relevant curriculum time		35	57	select
	Professional instructor	Kendall	24	45	remove*
	Club activity	W=.377	16	34	select
	After school program	X ² =101.876	51	61	remove*
	On-demand course	df=9	39	58	remove*
	Break time	p<.001	80	76	remove
	Through campaign		55	64	remove
	Operate online		14	32	remove*
	Class teacher's time		79	75	remove
Instructor	Health teacher	Kendall	17	6	select
	Class teacher	W=.174	68	31	remove
	External lecturer	X ² =20.933	28	9	select
	Senior in employment	df=4	62	25	remove
	Peer leader	p<.001	53	21	remove
Place	Audiovisual room	Kendall	81	44	remove
	Classroom	W=.578	10	2	select
	Special room	X ² =69.413	41	14	select
	Health education room	df=4	12	3	select
	Place of employment	p<.001	73	36	remove
Diffusion strategy	Expansion of target		29	10	select
	Club activities	Kendall	46	18	select
	Repeated education,	W=.072	67	30	remove
	Periodic evaluation	X ² =8.667	40	13	select
	Make council with employer	df=4, p>.05	47	19	select
Total	83			45	

(* means = Removed due to integration from study team)

4. 3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3차 설문 회수율은 29명 전문패널이 설문에 참여하여 2차 설문 회수율 대비 96.7%였다.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선택된 45개에서 전문가 논의로 부터 1개 내용이 추가되어 46개 항목에 대해 Likert 5점 척도의 각 항목별 적절성을 조사하였다. 3차 델파이 조사에서 객관적인 변수 채택의 절단점은 적절성이 4점 이상인 경우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4점 이하 항목 9개가 삭제되어 최종 3개 영역 37개 교육내용과 요소가 선정되었다[Table 3].

3차 설문 분석결과, 교육내용 영역 중 성희롱 의미의 교육내용에서는 성희롱의 개념, 판단의 법적 기준,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 발생원인과 권력적 특성, 궁정적 인간관계와 성희롱, 성폭력과의 차이점, 성희롱의 문제점의 6가지, 성희롱 예방 및 대처 교육내용에서는 5가지로 성희롱의 피해자, 방조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 성희롱 발생 시 대응절차,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 성희롱 관련법과 제도, 타인과의 안전한 사회적 거리유지가 선정되었다. 성 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내용에서는 6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중요성, 성희롱에 대한 감수성 증진, 성 의식 점검, 자존감 향상, 효과적인 거절 표현, 남녀의 성 인식 차이가 선정되었다.

교육방법 영역에서는 교수·학습방법에서 토론학습, 시뮬레이션 학습, 역할극과 연극교육 등, 문제기반 학습, 모의재판 5가지가 선정되었으며, 학습자료는 동영상 등 시뮬레이션 학습 자료와 표준 강의안의 2항목이 선정되었다. 교육집단의 경우 소규모 그룹 대상 교육 1 가지가 선정되었고, 교육의 실시횟수는 4회기 실시가 평균점수 4점을 얻어 단독 선정되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적용하는 시간의 경우 보건수업 시간 1개가 선정되었고, 교육 강사는 외부 전문 강사와 보건교사의 2항목이 선정되었다. 교육장소는 보건교육실, 교실, 특별교실이 모두 선정되었다.

교육확산전략 영역에서는 교육대상의 확장, 교육과 평가의 주기적 점검, 성문화 개선 학생활동 활성화, 취업생 근무지 인사담당자와의 성희롱예방 협의회 실시 및 고등학생의 취업 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이수 법제화가 선정되었다[Table 3].

Table 3. Education Contents and Methods Drawn from the 3rd Delphi Survey (N=30)

Sub-domains	Contents	Appropriateness (Range 1~5)		Select (≥ 4)
		M	SD	
Meaning of sexual harassment	Concept of harassment	4.66	0.67	select
	Types	4.79	0.62	select
	Causes	4.31	0.85	select
	Legal criteria	4.79	0.41	select
	Problems	4.41	0.73	select
	Interpersonal relation	4.31	0.93	select
Prevention & coping	How to prevent	4.79	0.41	select
	How to avoid	4.27	0.45	select
	Procedures in case	4.97	0.19	select
	Laws & institutions	4.41	0.82	select
	Maintain proper distance	4.07	0.92	select
	Increase sensitivity	4.59	0.63	select
Increase gender sensitivity	Importance of self-determination	4.83	0.47	select
	Improve self-esteem	4.45	0.83	select
	Effective rejection	4.62	0.90	select
	Difference in gender	4.24	0.87	select
	Sex-related attitudes	4.34	0.67	select
	Discussion learning	4.51	0.46	select
Teaching methods	Simulation learning	4.59	0.73	select
	Drama, role play	4.52	0.69	select
	Media literacy	3.76	0.87	remove
	Mock trial training	4.21	0.77	select
	Problem-based learning	4.48	0.69	select
	Club education	3.93	1.00	remove
Education materials	Investigate & announce	3.83	0.97	remove
	Standard lecture	4.07	0.88	select
	Drama & video	4.41	0.73	select
	Education size	4.76	0.44	select
	Classroom size	3.79	0.98	remove
	3rd, grade only	2.76	1.30	remove
Session	Three	3.62	0.88	select
	Four	4.00	0.82	select
	More than five (≥ 5)	3.86	1.13	remove
	Time	4.00	0.89	select
	Relevant curriculum time	3.10	1.08	remove
	Creative experience time	3.83	1.10	remove
Instructor	Health teacher	4.07	0.88	select
	External lecturer	4.38	0.68	select
	Classroom	4.21	0.98	select
	Place	4.14	0.74	select
	Special room	4.28	0.80	select
	Health education room	4.28	0.80	select
Diffusion strategy	Expansion of target	4.48	0.78	select
	Club activities to prevent	4.14	0.83	select
	Periodic evaluation	4.28	0.65	select
	Make council with employer	4.31	0.66	select
	Total	46		37

최종 선정된 37개 변수 중 교육내용 17개를 교육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고등 보건 교과 성교육 영역, 고용노동부의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 등의 각 교육지침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비교, 제시하였다[Table 4].

Table 4. Comparing Final Standard Education Contents to Previous study contents

Sub-domain	Contents	This study	Comparing previous		
			A	B	C
(6)	Meaning of sexual harassment	Concept	●	●	●
	Legal criteria	●	▲	■	●
	Types	●	●	■	●
	Causes	●	▲	●	●
	Interpersonal relation	●	■	●	■
	Problems	●	▲	●	●
(5)	Preventing & coping	How to prevent	●	▲	●
	Procedures in case	●	▲	●	●
	How to avoid	●	■	■	●
	Laws & institutions	●	●	●	●
	Maintain safety	●	●	●	▲
(6)	Increase gender sensitivity	Self-determination	●	▲	▲
	Increase sensitivity	●	●	■	▲
	Sex-related attitudes	●	●	▲	▲
	Improve self-esteem	●	●	●	▲
	How to reject	●	●	●	▲
	Difference in sex	●	●	●	▲

A: Standards for Sex Education of Ministry of Education, B: 2015 revision curriculum of Ministry of Education, C: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manual of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Satisfied as standard contents, ■: Partially satisfied as standard contents, ▲: Not satisfied as standard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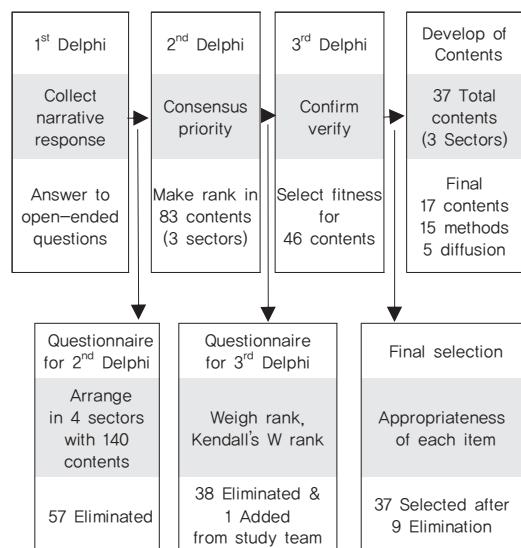


Fig. 1. Study flow chart on delphi methods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취업준비 고등학생은 졸업 후 다양한 영역에서 직업 활동을 시작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된다. 성희롱 피해 경험 조사에 따르면 나아가 어렵고 경력이 적을수록 성희롱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2], 이런 성희롱 피해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 뿐 아니라[4][5], 직업경력의 단절이나 노동시장의 위축과 기업 이미지 하락 등의 사회문제와도 직결된다[6]. 국내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취업 전,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개발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다. 고등학생들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연간 2시간 이상 교육받고 취업 전 안전교육 지침에 따라 약 1시간 정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을 받는 등[8], 성희롱 관련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성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한 변해정(2014)의 연구는 일상적인 성 지식과 정보교육이 아닌, 성적 시민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관계에서 보호되어야 할 성적권리와 관계교육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성에 대한 교육은 사회 맥락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에게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맥락을 알려주는 것이 성교육 시작이라고 하였다[12]. 이를 위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성교육이 요구되며, 특히 취업을 앞둔 고등학생을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건강한 성적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9][10].

이에 본 연구는 멜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취업준비 고등학생을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표준내용과 방법 개발을 통해 취업준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표준내용과 방법을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서 활용하고 향후 취업학생들이 직장생활 속에서 성희롱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실천적 지식과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S특별시와 K도 등 수도권의 성교육 담당 보건교사, 취업담당교사, 특성화 고등학교 관리자와, 보건교과 수석교사, 법의간호사,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전

문가들만을 통해서 실시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 결과 1차 멜파이 설문을 통해, 취업준비 고등학생을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적합한 표준내용은 처음에 4개 영역의 140개로 제시되었다. 전문가들이 기술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통합, 정리하는 기초 작업을 위해 고등학교 보건교과서와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 고용노동부의 성희롱 예방교육 매뉴얼 등을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멜파이 2차 조사 결과, 83개 항목에서 가중치 순위 49 이상, Kendall's W 순위 75이상을 절단점으로 하여 총 38개가 제외되었다. 2차 설문의 기타 의견으로는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중요성이 포함되어 제대로 교육된다면 가해자 예방 교육이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취업준비 고등학생의 경우 장차 피고용인이 되는 경우이므로 권력과 성희롱의 관계에 대한 교육내용보다는 폭력여부를 구분하고 예방하는 법과 대처법 위주로 교육을 함이 적합하며, 성희롱이 성 차별적 문화에서 기인되므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고등학생의 취업 전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이수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기타의견이 수렴되어, 3차 설문에서는 이를 교육 확산전략 영역에 1개추가 질문항목으로 구성하여 모두 46개의 항목이 제시되었다.

멜파이 3차 조사 결과, 각 문항에 대한 적절성을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여 항목 당 평균 4점을 절단점으로 하였고 최종적으로 총 37개의 표준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그리고 교육 확산전략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멜파이 3차 조사에서 최종 선정된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내용 및 방법 개발에서 교육 내용 영역은 성희롱 개념의 이해 부분이 6개로써 성희롱의 판단기준, 성희롱의 유형과 사례, 성희롱의 정의 및 개념, 성희롱이 피해자, 행위자, 직장,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 성희롱의 발생원인과 권력적 특성, 바람직한 이성 관계와 성희롱·성폭력의 차이점 순이었다. 성희롱 예방 및 대처의 교육 내용은 5개가 선정되었으며 성희롱 발생 시 대응절차, 성희롱의 피해자, 방조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 성희롱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 성희롱 관련법과 제도, 타인과의 적절한 거리 유지와 안전 공간 확보의 중요성 순이었고, 고용노동부의 성희롱 예방과 대처 매뉴얼의 교육 자료에서 교육정보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학생들에게 실제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방법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성 인지 감수성 향상의 교육 내용으로는 6개가 선정되었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중요성, 효과적인 거절 표현 훈련, 성희롱에 대한 감수성 높이기, 자존감 향상 교육, 성의식 점검하기, 남녀 성 인식 차이 순이었다. 성희롱에 대한 감수성 향상은 보건 교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성 교육 내용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섹슈얼리티나 성 인지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교육 방법에 대한 영역에서는 토론학습, 시뮬레이션, 역할극,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 등 실제 학생들이 체험하고 연습할 수 있는 문제해결, 체험형 학습 방법이 선택되었다. 멜파이 연구 결과, 지식전달 위주의 강의식 교육을 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취업을 앞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 집단을 구성할 때는 소그룹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집단의 크기임을 확인하였고, 교육 횟수는 4회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여 일회성 단체 특강에 대한 교육적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취업준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시간은 교육과정 중 보건교육 시간에서 확보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택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보건교사에 의한 성교육 활성화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교육 강사로는 외부 전문가와 학교 내 보건교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였으며, 외부 강사 초빙을 위해서는 학교 성교육 예산의 적정수준 확보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교육 장소로는 보건교육실, 일반 교실, 특별실의 3개 항목이 선정되어 단체교육이 아닌 소그룹 교육에 적합한 공간이라면 모두 활용 가능한 것으로 여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교육확산 전략의 영역은 4개 항목이 선정되었으며, 고등학생 취업 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이수 법제화로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의 확장, 취업생 근무지 인사 담당자들과 학교 취업담당자의 성희롱 예방관련 협의회 실시, 주기적인 평가, 학교 성문화 개선을 위한 또래지도자 학생모임 교육의 활성화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졸업 후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의 확대 및 의무화가 필요하며, 추후 이를 위한 전문가 양성과 교육 적용을 위한 교육당국과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존의 선행 교육자료와의 비교에서, 학교성교육표준안의 경우 고등학교 성교육 내용으로 제시된 30차시 중 성희롱만을 단독 주제로 이끌어가는 차시가 없는 점에 비해 본 개발 자료는 성희롱 예방을 위해 체계화되어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보건 교과를 살펴보면, 성희롱 예방교육의 요소는 성희롱의 실태 이해, 성희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요소, 주요 법과 제도, 예방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방안 등으로써 본 연구의 개발 내용에 모두 속해 있다[16].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육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여 피해와 가해, 방조자 예방이나 성희롱 감수성 높이기, 성적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내용 등이 으로 나누어 교육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각 교육과정마다 시뮬레이션이나 역할극, 문제기반 학습을 적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매뉴얼에 수록된 예방교육 자료의 경우, 성희롱 관련법과 개념 규정, 판단기준, 성희롱 실태와 유형, 피해자의 대응방법과 절차, 행위자 예방과 대처, 사내 구제절차 등, 지식 전달 위주의 핵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17]. 해당 매뉴얼은 이미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성인 직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회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고등학생의 경우, 상황에 따른 피해예방과 대처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연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10].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의 활용을 위해서는 취업 전 고등학생의 수준과 교육 요구도, 개별 학교에 적합하게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육방법

의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취업준비 고등학생을 위한 성희롱 예방 표준교육내용 및 방법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개발된 각 내용별 성취목표의 달성을 분석하는 효과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취업준비 고등학생에게 본 표준교육내용과 방법, 평가방안을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본 개발자료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교육 대상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희롱 예방 표준교육내용과 방법의 적용은, 학생 개인에 있어서는 미래의 직업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며, 사회적으로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노동력과 인권보호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교육의 의무화 제도가 선제적으로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제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계와 정책입안자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2. 결론

본 연구는 취업준비 고등학생의 취업 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표준 교육내용과 방법 개발을 위해 멜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조사를 시도하였다. 본 멜파이 연구를 위해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 취업담당 전문가와 성폭력 전담 현장전문가 등 30명을 섭외하여, 고등학생의 성희롱 예방교육에 필요한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내용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예방교육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 선정된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내용과 방법은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확산전략의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되었으며, 1차 설문결과에서 도출된 140개 항목을 2차, 3차 멜파이 조사를 통해 계속 객관적 계량화로 정제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37개 항목의 최종 표준교육 내용과 방법이 선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 졸업 후 고등학생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차시의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4차시에 맞춰 교육 내용요소가 선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중매체 분석을 통한 사회 성문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나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 내용이 우선순위나 중요도 평정에서는 어렵게 탈락하였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성교육 시간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성 심리,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등에서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입니다. This research was based on a part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참 고 문 헌

- [1] <https://kess.kedi.re.kr/index>
- [2] 김민정,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제7권, 제3호, pp.185-209, 2015.
- [3] 노충래, “청소년의 성희롱 피해 및 가해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4권, pp.36-68, 2002.
- [4] R. E. Gartner and P. R. Sterzing, “Gender micro aggression as a gateway to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ssault: Expanding the conceptualization of youth sexual violence,” *J. of Women and Social Work*, Vol.31, No.4, pp.491-503, 2016.
- [5] P. A. Palmieri and L. F. Fitzgeral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 sexually harassed women,” *J. of Traumatic Stress*, Vol.18, Issue.6, pp.657-666, 2005.
- [6] 한희정, 전해정, “한국사회의 성희롱 개념 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제31권, 제1호, pp.87-128, 2015.
- [7] 박귀천, “성희롱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독일의 작업거부권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제3권, 제1호, pp.1-31, 2011.
- [8] 백성숙, 전은경, 권인숙, 이광호, 이종은, “교사에게 적용한 미디어 리터러시 중심 성교육 프로그

- 램의 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28권 제3호, pp.229-238, 2015.
- [9] 2016학년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교육과, 2016.
- [10] 박지아, 아동청소년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과 성인지적 관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2012.
- [11] 이혜정, “학교 성폭력예방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탐색,” 교육종합연구, 제13권, 제1호, pp.167-191, 2015.
- [12] 이종성, *델파이 방법*, 교육과학사, 2001.
- [13] 김정인, 손영미, 김효창, “성별 및 성희롱 경험에 따른 성희롱 통념과 성역할 관련 태도들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제11권, 제4호, pp.377-397, 2006.
- [14] 박동명, “성희롱에 대한 법적 이해와 대책,” 법학 논총, 제23권, 제1호, pp.253-278, 2003.
- [15] 오정진, “성희롱의 법적 개념,” 여성과 사회, 제9호, pp.240-251, 1998.
- [16] 2015개정교육과정 고시자료집, 교육부, 2015.
- [17] 국가성교육표준안 자료집, 교육부, 2015.
- [18] 김민정,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제7권, 제3호, pp.185-209, 2015.
- [19]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매뉴얼, 고용노동부, 2016.
- [20] 노승용,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 전문적 통찰로 미래예측하기,” 국토, 제299호, pp.53-62, 2006.
- [21] C. Okoli and S. D. Pawlowski, “The Delphi method as a research tool: an example, design considerations and applications,” Information and Management, Vol.42, No.1, pp.15-29, 2004.
- [22] 강용주, “델파이 기법의 이해와 적용사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8.
- [23] 손승아, “대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심리건강교육,” 여성건강, 제5권, 제2호, pp.87-103, 2004.

저자소개

구 민 육(Min-Wook Gu)

정희원



- 2006년 ~ 현재 : 경기도교육청 소속 중등 보건교사
- 2017년 ~ 현재 : 경기도 보건교사회 중등 학술이사 및 경기중등 보건교육연구회 연구위원
- 2015년 ~ 현재 : 법의간호연구회 소속 회원

<관심분야> : 법의간호학,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Media Literacy를 활용한 성 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등

박 완 주(Wan-Ju Park)

정희원



- 2008년 ~ 현재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정신간호 부교수
- 2017년 ~ 현재 : 경북대학교 수사 과학대학원 법의간호학 학과장
- 2011년 ~ 현재 : 영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관심분야> : ADHD, 뇌과학 접근의 Neurofeedback 중재, PTSD, 청소년의 성폭력예방, Cultural Resilience, 지역사회 정신건강 등